

## 국유임산물(2020년 제3차 입목처분) 매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예정가격 : 82,700,000원

나. 반출기간 : 물건인도일로부터 8개월 까지

<제3차 입목처분>

산물 소재지	수종및 재종	수량		조재율 (%)	생산 지정 (m³)	용도	반출 기간	면적 (ha)	매각 방법
		본수 (본)	재적(m³)						
	계	23,645	3,949.36		2,851.67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10 외 3개소	소나무	842	227.16	77.42	175.867	원료재	물건 인도일로부터 8개월	28.5	공개 입찰
	해송	35	11.18	77.91	8.71	원료재			
	낙엽송	1,149	339.89	85.25	289.756	제재			
	낙엽송	615	181.86	85.25	155.036	원료재			
	잣나무	629	63.96	70.00	44.772	원료재			
	굴참	3,315	732.05	79.83	584.396	원료재			
	상수리	63	14.32	74.95	10.59	원료재			
	신갈	12,773	1,942.43	66.18	1,285.5	원료재			
기타 활엽수	4,224	436.51	68.05	297.045	원료재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www.onbid.go.kr](http://www.onbid.go.kr)))으로만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① 매각 수량은 생산예정량으로 반드시 입찰 전 현장을 확인하여 목재 상태와 수량, 운반조건, 품질 등을 확인 하신 후 응찰하시고 계약체결 후에는 매각 임산물의 수량, 품질 등이 상이한 경우에도 매수자(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매각건은 표준지조사로 재적을 산출하였음

- ② 산물반출과 관련된 사유림 통과지역에 대한 협의 및 민원발생 처리는 매수자가 책임
- ③ 소나무류(소나무) 입목 반출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43-850-0341)에 문의하여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을 것
- ④ 필히 현지 안내 시 참석하시어 입목처분지 주변 반출사항 및 반출로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및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안), 위치도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할 것
- ⑤ 본 임산물은 입목이므로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입찰 전 반드시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운영지원팀 팩스 : 043-854-6105)  
\* FAX 제출 후 확인요망
- ⑥ 국유임산물 반출을 위한 임산물 운재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추가 개설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우리 관리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임산물 운재로 시설 완료 후 반드시 서면으로 준공신청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국유임산물을 반출해야 함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2조(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등) 제4항
- ⑦ 임산물의 반출 완료 후에는 임산물 운재로는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함  
\* ‘산림청고시 제2013-34호’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지방서 작성기준」
- ⑧ 산물반출 완료 시 국유림관리소에 붙임 3의 “국유임산물 반출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⑨ 본 별채 대상지의 국유임산물 반출은 현지 여건 사정으로 2020.5.1. 이후 부터 반출 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⑩ 매수자(계약자)는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⑪ 금회 매각되는 입목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의해 조사된 임지로 벌채 목 이외 잔존목에 대한 피해 없이 벌채하여야하며 잔존목 훼손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⑫ 작업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에 대해 전량수거 등 산림정화 철저
- ⑬ 현지안내가 필요한 경우 경영조성팀(043-850-0333~4)으로 연락 바람

###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 가. [www.onbid.co.kr](http://www.onbid.co.kr)(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나.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산림청 홈페이지)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0.2.4.(화) 11:00 ~ 2020.2.11.(화) 16:00
- 나. 전자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2.12.(수) 11:00, 충주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개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예정가격미만의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보지 아니함)
-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 6.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 가.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 관서에 체납액이 없고,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는 대리인 자격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별채 허가 등을 받아 별채한 실적이 있는 자의 경우 : 별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자격증 사본
- 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있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의 경우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 원목생산업등록증 사본

## 7.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 본 입찰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 8. 입찰보증금 납부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자보증서로도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 미입금시 입찰무효처리
- 다.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다. 소정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0.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낙찰금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도 동일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가 위 “가”항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1. 계약시 제출서류**

- 가. 인감증명서 1부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다. 인감도장 및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라. 계약보증금(낙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증기간 반출기간 이상 보증 필수

**12. 기타 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축한 “온비드”를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매각 입찰에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 나. 응찰자는 “**불입**”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안) 및 동계약서의 제1조 내지 제13조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기준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관리소에 비치되어 있는 재적 조서 및 현지를 숙람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서무담당(☎043-850-0312)으로, 매각임산물에 관한 사항은 경영조성담당(☎043-850-03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4.

충주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 현 지 확 인 등 확 약 서

입찰(계약)건명 :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공고로 게시된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안), 일반계약조건 및 특수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되어 있는 매각물건에 대한 재적조서열람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상기 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 (인)

담당공무원 : (인)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입찰(계약)건명 : 국유임산물(입목처분 차) 매각

본인은 상기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 (인)

담당(계약)공무원 : (인)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3)

## 국유임산물 반출 완료계

1. 계약 명 : 2020년 국유임산물(\_\_\_\_차 입목처분)매각 계약
2. 소재 지 :
3. 계약 량 : \_\_\_\_\_본/\_\_\_\_\_m<sup>3</sup>
4. 계약 금액 : 금\_\_\_\_\_원
5. 착 수 일 : 2020년 \_\_\_\_\_월 \_\_\_\_\_일
6. 완료 예정 일 : 2020년 \_\_\_\_\_월 \_\_\_\_\_일

위 사업을 계약조건에 따라 실행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0년 \_\_\_\_\_월 \_\_\_\_\_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소반
임산물 소재지					
반출(벌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m <sup>2</sup>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본)	입목재적(m <sup>3</sup> )	조재(제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m <sup>3</sup> , 톤(t)]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갑)                    인

매 수 인(을)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입목·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을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임목의 성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혹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성장량 대금 = 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성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을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을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반출·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갑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속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임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모수작업의 경우와 벌도목·원목·굴취수목 및 목탄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을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같음한다.

소재지	지번 (임반·소반)	공부면적 (㎡)	대부·사용 허가면적(㎡)	산지일시 사용면적(㎡)	기간	비고
계		1,635,000	8,000	8,000		
3차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2-10 외3개소	1,635,000	8,000	8,000	물건인도일로부터 8개월까지	